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84
----------	-------

발의연월일 : 2026. 7. 10.

발 의 자 : 김미애 · 성일종 · 김태규
조배숙 · 최보운 · 엄태영
김대식 · 우재준 · 이현승
안상훈 · 이주영 · 조정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 이후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들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신고의무자들이 보복성 민원, 소송 및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노출되어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범죄 조기발견체계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의무 및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제5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생략) <u><신설></u>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6조(준용) ① (생략)	제56조(준용) (현행 제1항과 같음)